

## 급여제도 개선안 효과 분석

###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상정된 급여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수급자관련 불만 사항들을 수정 보완한 개선안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 외에도 저희 공단은 지속적인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국민연금이 더 나은 제도로 성숙해나가도록 상시적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및 내연금 알아보기 캠페인 등 발로 뛰는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제도 개선안의 효과 분석은 현재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에게 있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이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개선 사항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높은 급여율하에서 급여제도개선은 국민의 혜택이 커지는 반면 후세대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함을 함께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수급자 관련 불합리점 및 개선사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브리핑해나갈 계획이오니 다시 한번 기차분들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감액(조기)노령연금액 지급률 상향조정

##### ● 취지 및 개요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감액(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지급율을 기본연금액의 2.5%로 상향 조정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도모

##### ● 효과

감액(조기)노령연금액 지급율 상향 조정으로 233,644명의 수급자에게 연간 368억원의 수급혜택이 돌아감(세부현황 첨부 참조).

## ○ 노령연금과 구직급여의 병급조정 폐지

### ● 취지 및 개요

구직급여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함께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하여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 ● 효과

노령연금과 구직급여의 병급조정 폐지로 10,856명의 수급자에게 175억원의 수급혜택이 돌아감(세부현황 첨부 참조).

## ○ 중복급여의 조정기준 완화

### ● 취지 및 개요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 ● 효과

중복급여 조정기준 완화로 5,108명의 수급자에게 2가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됨(세부현황 첨부 참조).

## ○ 재혼한 분할연금 수급자

### ● 취지 및 개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액을 정지하던 것을 계속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간의 병급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혼시 연금 분할의 공평성 확보

### ● 효과

재혼으로 분할연금이 지급정지중인 수급자 65명에게 연간 1억 8백만원 의 수급혜택이 돌아감(세부현황 첨부 참조).

# 김액(조기)노령연금액 지급을 상향 조정으로 수급자 23만명 에게 연금액 추가지급

## 1. 개정요지 및 내용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김액(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지급율을 기본연금액의 2.5%로 상향 조정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도모

### <가입기간에 따른 김액노령연금 지급율 변동>

현 행	개 정
47.5% (10년) ~ 92.5% (19년)	50% (10년) ~ 95% (19년)

## 2. 김액(조기)노령연금액 지급을 상향 조정으로 233,644명의 수급자에게 연간 368억원의 연금 추가지급

### 가. 현황

(2007.3월 지급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원)

구분	수급자수	추가지급액		1인당 추가액	
		월간	연간	월평균(원)	연간
계	233,644	3,070	36,843	13,141	157,692
김액	109,983	1,525	18,304	13,869	166,428
재직자	19,439	1,308	2,841	12,552	150,624
조기	104,222	237	15,698	12,181	146,172

### 나. 사례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이열재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월 974,540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법개정시 월 1,000,430원의 연금액을 지급받음(월 25,890원이 증액)

## 1. 개정요지 및 내용

- 구직급여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함께 받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하여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 &lt;노령연금과 구직급여와의 병급조정 폐지&gt;

현행	개정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지급정지(최장 8개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 계속 지급

## 2. 노령연금과 구직급여의 병급조정 폐지로 10,856명의 수급자에게 175억원의 연금 추가지급

## 가. 구직급여 수령으로 정지중인 노령연금수급자 현황

## ○ 현황

(2007.3월말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정지중인 수급자	정지추정액	평균정지월수	평균연금월액
10,856	17,544	6개월	266,695원

## ○ 1인당 월평균 정지금액규모별 현황

(단위 : 명)

계	10만원미만	20만원미만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상
10,856	697	4,556	2,120	1,576	1,044	475	206	124	58

## 나. 사례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안종만은 구직급여수령을 2007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노령연금이 지급정지중임
- 구직급여수령으로 총 7,618,800원(8개월분)의 노령연금액을 현재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1. 개정요지 및 내용

-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 유족연금액의 20% 지급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 사망일시금 상당액 지급

### 2. 중복급여 조정기준 완화로 5,093명의 수급자에게 2가지 연금 수령

#### 가. 중복급여 조정기준 완화자 현황

##### ○ 참고자료

(2007.3월말 현재)

발생급여		선택급여	지급할 급여	완화 대상자
노령연금 (본인급여)	유족연금 (가족급여)	노령연금	노령+유족연금의 20%	4,599
		유족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본인급여)	반환일시금 (가족급여)	노령연금	노령+사망일시금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본인급여)	유족연금 (가족급여)	장애연금	장애+유족연금의 20%	177
		유족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본인급여)	반환일시금 (가족급여)	장애연금	장애+사망일시금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본인급여)	유족연금 (가족급여)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사망일시금상당액	
유족연금 (가족급여)	유족연금 (가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유족연금의 20%	317
유족연금 (가족급여)	반환일시금 (가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주) 반환일시금이 선발급여이고, 연금이 후발급여인 경우 모두 지급

○ 추가지급액 현황

(2007.3월말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노령+유족연금의 20%	장애+유족연금의 20%	유족+유족연금의 20%
수급자수	5,093	4,599	177	317
월추가지급액	142	129	5	8
1인당평균지급액	27,796원	27,961원	28,892원	24,828

나. 사례

-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김혜경
  - 구직급여수령으로 현재 월 433,780원의 노령연금이 지급정지중
  -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376,450원
- 법개정시 연금지급액은 본인의 노령연금액 433,780원과 유족연금 20%인 75,290원을 합한 509,070원임

**4 재혼한 분할연금 수급자 65명에게 연금 평생 지급**

1. 개정요지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액을 정지하던 것을 계속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간의 병급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혼시 연금 분할의 공평성 확보

2. 재혼으로 분할연금이 지급정지중인 수급자 현황

가. 재혼한 분할연금 수급자 현황

수급자수	1인당 평균연금월액	월지급액	연간지급액
65명	138,696원	9백만원	108백만원

○ 연금월액 금액규모별 현황

계	10만원미만	20만원미만	30만원	40만원미만
65	27	25	8	5

나. 사례

-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는 분할연금 수급자 박정자(61세)는 2007.1월에 재혼하여 현재 월 353,110원의 분할연금이 지급정지중임
- 법개정시 재혼하였다더라도 연간 4,237,320원의 연금액을 지급

**5 연금급여 관련 통계 현황**

1. 감액 및 조기노령연금수급자 현황

가. 금액규모별 현황

2007.3월 급여지급자 기준 (단위 : 건, 만원)

수급자		금 액		10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소계								
노령	감액	소계	129,422	2	3,098	30,656	37,300	28,710	16,099	7,656	5,901
		남자	109,388	1	1,492	20,187	31,123	27,409	15,748	7,561	5,867
		여자	20,034	1	1,606	10,469	6,177	1,301	351	95	34
	조기	소계	104,222	0	15,064	34,675	27,429	16,755	7,105	2,618	576
		남자	73,217	0	2,862	20,065	24,033	16,160	6,938	2,589	570
		여자	31,005	0	12,202	14,610	3,396	595	167	29	6

나. 가입기간별 현황

(2007.3월 지급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10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4년미만	14년이상 -16년미만	16년이상 -18년미만	18년이상 -20년미만
합계	233,644	66,653	46,014	54,438	49,440	17,099
	87,155	17,793	14,836	21,742	23,666	9,118
감액노령	129,422	21,682	22,709	36,062	35,420	13,549
	52,981	5,752	7,578	15,059	17,369	7,224
조기노령	104,222	44,971	23,305	18,376	14,020	3,550
	34,174	12,041	7,259	6,683	6,297	1,894

## 6

###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간 영평성 확보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도달 시까지 받게 되는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 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

## 7

### 미지급급여와 사망일시금의 생계유지인정기준 완화

연금청구가 늦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청구하는 미지급급여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지급하며,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 자매까지는 실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관계로 인정(다만 4촌 이내의 방계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요건을 필요로 함)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 증진

## 8

###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

국적상실, 국외이주, 타공적연금가입자로 된 때, 가입자자격상실 후 1년경과(1999.1.1폐지)사유로 반환일시금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5년의 소멸시효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60세 도달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9

### 급여 압류 제한 설정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급여지급계좌를 압류한 기관(자)이 연금 지급액을 채권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07.7월 시행)



## 10

## 고령근로 유인성 급여 제도 도입

-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을 연기 희망할 수 있도록 함  
60세 이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1회에 한해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되,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1개월마다 0.5%)하여 고령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함
- 고령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재설계  
55세부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선택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연령별 지급율의 감액 폭을 현행 5%pt에서 6%pt 씩으로 확대함으로써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나가 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종전에는 65세 이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정지하였으나, 60세 이후부터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득활동으로 급여가 정지된 후 다시 소득이 없어 연금을 재개하는 경우 소득활동 기간만큼 지급율을 상향조정함

## 11

##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 개선

- 종전에는 남성이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배우자 사망당시 60세 이상이어야 했으나 수급권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 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조정함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종전 '가급연금'을 '부양가족연금'으로 용어를 바꾸고 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배우자의 자녀를 추가하여 재혼으로 가족구성원이 되는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 현실 반영

## 12

##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최고 50개월 한도 내에서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함과 아울러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며, 이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2007.7.1 이후에 1자녀를 초과하여 얻은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

## 13

##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2007.7.1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